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5. 3. 28.(금), 14:30
2. 장소 :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1	민조홍, 문혜성, 민병원, 김관창, 안등용, 배성아, 반지민, 서유리, 이명경, 김유환, 한유경	안동인(간사)
불참인원	1	한은주	

4. 안건

- ☐ 제1호의안 :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 제2호의안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5. 개회선언

- 가. 간사는 제9기 대학평의원회 구성 후 1차 회의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고, 금일 2차 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하다.
- 나. 간사는 한은주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한 후 개회를 선언하고,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차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다.

6. 안건 심의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1) 간사는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장, 부의장 선출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설명한 후,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평의원들에게 의견제안을 요청하다. 참고로 지난 제8기 대학평의원회는 의장, 부의장 후보를 추천, 재청받은 후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호선으로 선출하였음을 안내하다.
- (2) 민병원 평의원은 전 기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하고, 전원이 동의하다.

- (3) 문혜성 평의원이 교수평의회 의장인 민조홍 평의원을 대학평의회 의장으로 추천하고, 민병원 평의원이 재청함에 대하여 참석 평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이에 간사는 제9기 대학평의원 의장으로 민조홍 평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4) 간사는 부의장 추천을 요청하고, 민조홍 평의원이 노동조합위원장인 안등용 평의원을 부의장으로 추천하고, 배성아 평의원이 재청함에 대하여 참석 평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이에 간사는 제9기 대학평의원 부의장으로 안등용 평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5) 의장으로 선출된 민조홍 평의원은 대학평의회는 학교의 여러 사안에 대하여 학생, 교수, 동창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가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의장, 부의장과 여러 평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다.
- (6) 의장은 심의에 앞서 문의사항이 있는지 질문하다.
- (7) 민병원 평의원이 교수평의회 임기가 올해 말에 종료되어 대학평의원의 임기와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 질의하다.
- (8) 간사가 고등교육법에서 대학평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는 교수평의회 임기와 대학평의원 임기가 어긋나게 되어 1년 후에 보궐 평의원을 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교수 평의원의 임기를 한 번 1년으로 조정해서 맞출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다.
- (9) 의장은 직원 평의원도 임기가 동일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안등용 평의원이 작년 9월에 보궐 위원으로 위촉되어 제8기 평의원 잔여 임기를 수행하였다고 말하다.
- (10) 의장이 평의원 임기가 구성단위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하다.

□ 제2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2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대학원학칙 제32조제2항과 제3항에 관한 내용으로 통역번역대학원의 석사 학위 취득 요건 연한을 “수료 후 4학기”에서 “재학 연한(입학연도로부터 7년 이내)”로 개정하는 안이라고 설명하다.
- (3) 간사는 대학원학칙 제29조제1항에서 논문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하는 학위 수여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이하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서 논문을 쓰지 않고 학점을 추가 취득하거나 연구실적 승인으로 논문 제출을 갈음하는 특별 규정이며, 제4항에서 통역번역대학원은 석사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 (4) 간사는 이어서 제29조를 전제로 논문제출연한을 규정한 것이 제32조이며, 제32조제1항에서 석사는 7년, 박사는 11년,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제29조제2항, 제3항과 제6항부터 제11항의 경우 특수한 조건에서 논문 제출이 대체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연한 내에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3항은 예외 규정으로 일부 전문·특수대학원이 예외적으로 과정수료 후 3학기 또는 4학기 이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년도로부터 5년 이내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통역번역대학원도 과정수료 4학기 이내에 종합시험을 합격해야 함을 이번에 석사 재학연한인 7년 이내로 완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 (5) 간사는 제32조의 체계도 정비하였다고 하며, 기존 체계가 복잡하고 제29조제7항이 제32조제2항과 제3항에 중복되어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어, 제29조제2항에서 제11항 전체에 걸쳐 기본적으로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재학연한 내에만 취득하면 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예외만 제3항에서 모아놓는 것으로 정비하였다고 말하다.
- (6) 안등용 평의원이 예외에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질의하다.
- (7) 간사는 통역번역대학원이 예외에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대학원은 변동없이 제32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라고 답변하다.
- (8) 간사는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이고, 학생들이 기한 내에 종합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학업 능력의 문제가 아닌 취업 등으로 인한 시기적인 문제이기에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 (9) 김유환 평의원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제32조제3항의 통역번역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요건이 제1항의 규정으로 바뀌었고, 그 외에는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10) 한유경 평의원은 통역번역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연한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경영전문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등 예외적인 학위 취득기한을 가진 다른 대학원들의 논문제출연한들도 향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11) 간사가 전문, 특수대학원 등 대학원의 종류가 많아 학칙 개정이 빈번하고, 체계가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향후 대학원 학칙을 체계적 정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다.
- (12) 의장은 한유경 평의원의 의견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13) 민병원 평의원은 대학원 학칙 제29조의 학위수여 요건 중 “평균성적 3.0이상”인 대학원이 많은데 현재와 맞지 않는 기준같아 변경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11항의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경우 “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성적이 B0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성적에 대한 표준이 없이 학과별로 너무 상이하다고 말하다.

- (14) 간사가 대학원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여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고 말하다.
- (15)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개정안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의결하고 심의를 종료하다.

나. 기타사항

□ 대학평의위원회 기능

- (1) 의장은 2월 26일 교내에서 발생했던 재학생과 외부인의 충돌 등 학내 문제를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는지 문의하다.
- (2) 김유환 평의원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명시된 대학평의위원회의 기능에 해당 내용이 없으며, 총장님께 대학평의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고 말하다.
- (3) 의장은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발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교수평의회 차원에서 학생처장에게 해당 건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하다.
- (4) 반지민 평의원은 학생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회의가 별로 없으며 대학평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6) 김유환 평의원은 총학생회장이 학생처장과 면담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7) 배성아 평의원이 해당 안은 대학평의위원회 안건은 아니고, 학생회장님이 학교와의 소통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학생회장이 학생처와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 (8) 서유리 평의원은 대학원 학생회로 보충학점 취득 관련 대학원 학칙 개정 문의가 있었는데 대학원 학칙 개정을 대학평의위원회에 안건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다.
- (9) 의장이 학칙 개정 안건에 대한 심의 기관이므로 학생이 대학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10) 한유경 평의원이 대학원은 학과마다 보충학점 부과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문의한 대학원생이 본인 전공에 문의하여 해당 전공, 학과, 대학원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평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 차기 회의 일정

- (1) 간사는 차기 회의로 결산 자문을 위한 정기회가 4월에 개최될 예정이고 회의 일정 문의 메일을 송부 예정이라고 안내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25년 3월 28일

의 장 민 조 홍

민조홍 (인) 